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22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16.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
- 나.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,000백만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금번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('24.9.13.)의 추가 대책 마련 및 노후 열수송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
- 다.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변경개요

- 대 상 : 서울에너지공사
- 출자규모 : 24,000백만원 출자
 - (기존) 20,000백만원 → (변경) 24,000백만원

※ 제326회 임시회 20,000백만원 출자 동의 완료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	소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	당초계획	659	59	200	140	200	60
	변경계획	699	59	200	140	240	60

나. 출자 변경 필요성

-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

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

- 특히, 목동 공동구 노후 배관은 '87년에 준공된 대형 열수송관으로 사고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체계 개선 시급
-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을 변경하여 출자하고자 함
 - '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: 214억 ※ 제326회 임시회 출자동의 200억
 -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: 26억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[지방재정법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[지방공기업법]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~③ 항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(☎ 2133-3554)